

IV. 保險市場 自由化措置의 豫想效果

OECD의 加入에 따른 우리나라 保險環境變化의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과 海外保險仲介人의 國內進出 許容,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廢止,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 再保險 早期自由化,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 對外開放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廢止와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은 外國社業者의 內國保險市場 進入時 支店이나 子會社 등 營業據點을 통한 방식 또는 事業者 本社에서 직접 營業을 하는 방식 모두가 허용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향후 內國社와 外國社의 競爭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이러한 變化는 우리나라 保險市場이 과거 規制에 의하여 運用되던 시장으로부터 향후 市場原理에 입각한 公正競爭下에서 運用되는 市場으로 급격히 轉換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經濟的 需要審査(ENT)條項의 폐지, 國境間 去來 追加許容 및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 등을 통하여 保險事業者間의 競爭이 촉진되고 契約者의 權益이 증진됨으로써 우리나라 保險市場은 과거 生産者 爲主의 市場에서 消費者 爲主의 市場으로 급속히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결국 이러한 變化는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 保險産業의 效率性和 國際競爭力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市場參加者들의 경우 市場原理에 입각한 經濟行爲에 있어서 충분한 經驗이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事業者間 過當競爭이나 國境間 去來時 詐欺나 不良 海外事業者와의 去來로 인한 保險金 支給不能事態 可能性의 增大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각각의 自由化措置들이 保險市場 및 市場參加者들에 대해 미치는 肯定的인 영향과 否定的인 影響(부작용)을 검토하여 公正적인 영향은 極大化하고 부정적인 영향은 加급적 最小化할 수 있도록 향후 政策課題의 焦點이 맞추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에 本 章에서는 상기의 주요 自由化措置들이 保險市場 및 市場參加者들에 미칠 豫想 效果를 검토하기로 한다.

1. 保險仲介人制度의 導入

정부는 그동안 保險業法에 관련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보험시장의 여건미 성숙 등으로 인하여 그 導入이 연기되어 온 保險仲介人(insurance broker)制度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는데, 1997년 4월 國內 損害保險仲介人 도입을 시작으로 1998년 4월에는 國內外 生命保險仲介人 및 海外損害保險仲介人の 國內進出을 허용하기로 하였다. 保險仲介人제도가 도입되면, 리스크관리, 언더라이팅, 상품 등 보험전문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보험중개인들이 계약자의 편에서 보험회사와 가격협상을 하는 등 보험계약을 증개하므로 보험사간의 商品開發, 價格 및 서비스경쟁을 가속화시켜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販賣組織의 多樣化 및 販賣組織別 效率性 증대로 국내판매조직 및 나아가 보험산업의 先進化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保險仲介人이 契約者의 立場에서 信義誠實의 原則에 따라 보험계약을 증개하도록 하는 데 동 제도 도입방향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保險仲介人은 信賴度, 財務能力, 稅制問題, 協商力 強化 등의 이유로 인하여 法人化·大型化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大型 保險募集組織의 出現이 예상된다. 한편 保險仲介人은 契約者를 위해 최적의 보험상품을 증개하게 되므로 이에 대응한 보험회사의 商品開發 努力이 촉진될 것이며 계약자의 니드에 부응하는 주문형상품(tailor-made product)의 개발도 활성화될 것이다. 또한 保險仲介人은 契約者의 危險管理者로서 효율적 위험관리 및 적절한 보험활용 등을 통하여 保險產業의 效率性과 보험에 대한 認識向上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保險仲介人制度가 정착되면 복잡다기한 보험종사 專門人力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고, 이는 향후 國內保險社의 海外進出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반면에 국내의 중개인이 고액기업성 우량물건을 적극적으로 증개하게 될 것이므로 보험사간의 價格引下 및 仲介手数料引上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우리나라 모집조직의 규모, 전문성, 축적경험(유지율) 등이 외국 중개인에 비하여 영세하고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우수한 판매전문가에 대한 스카웃경쟁 등으로 募集市場의 混亂이 예상되며, 영세한 대리점의 도산 및 회사직급이 축소되는 등 募集組織間 效率

性 競争을 통한 募集市場의 再編成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축적된 언더라이팅 경험과 고도의 위험관리기법을 구사하는 외국의 대형보험중개인이 국내에 진출할 경우 보험사에 대한 價格協商力과 고객에 대한 差別化된 서비스제공 등을 통하여 損害保險의 企業性保險과 生命保險의 團體保險을 중심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여 궁극적으로는 국내 보험중개시장을 잠식할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보험사간의 지나친 價格競争, 手數料 提供競争 등을 부채질하여 保險社의 安定性에 심각한 打擊을 줄 수도 있다. 수입극대화를 노린 중개인의 농간으로 인하여 계약자들이 불필요한 상품조합을 수용하거나 계약자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위주의 상품구입이 이루어져 계약자 이익이 침해당하는 등 새로운 형태의 消費者 被害가 발생할 소지도 많다.

<表 7> 保險仲介人制度 導入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가격, 대고객서비스경쟁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증대 · 신상품개발 촉진 및 모집조직간 경쟁을 통한 새로운 보험수요창출로 영업범위 확대 및 수익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사간 지나친 가격 및 수수료 제공경쟁으로 인한 수지악화 · 외국의 대형보험중개인 진입시 보험사에 대한 영향력 증대로 외국사의 시장잠식가능성
재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대형중개인의 국제적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경우 해외수재 소폭 증가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보험중개인을 통한 원수사의 해외출재 증가로 내국물건 수재감소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개인을 통한 최적의 보험상품 구매 가능 · 전문적 위험관리 및 손해사정서비스 수혜 · 계약자나이드에 부응하는 주문형 보험상품(tailor-made product) 활성화로 계약자의 효용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극대화를 노린 중개인의 농간으로 불필요한 상품구입을 수용하거나 계약자실정에 맞지 않는 수수료 위주의 상품구입에 따른 피해가능성
모집조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판매조직의 다양화 및 판매조직별 효율성 증대로 모집조직의 선진화 도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집조직의 혼란 · 영세대리점의 도산

2. 經濟的 需要審査의 廢止

經濟的 需要審査(ENT)는 保險社의 設立許可時 國內保險市場狀況, 國內保險産業發展에의 寄與可能性 및 國內保險産業과의 유대관계 등을 고려하여 市場需要에 부응하는 適正 數의 保險會社만을 許可해 주는 制度로서 外國사 뿐만 아니라 國內보험사 설립시에도 同等하게 適用되어 왔다. 加入協議 과정에서 우리 정부는 우리나라에서 보험사 設立기준으로 經濟的 需要審査를 적용하는 根據로서 新設生保社의 심각한 赤字狀態 및 國內保險市場規模에 비해 過다한 保險會社數 등을 설명하였으나 OECD측에서 우리나라 保險회사(생보)의 平均保險료가 OECD 平均에 비해 높고 우리나라보다 平均保險료가 높은 국가에서도 保險社設立과 有關한 法的 制限이나 經濟的 需要審査 適用事例가 없다는 사실을 들어 동 조항의 廢止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다.

그동안 經濟的 需要審査를 통해 新規事業者의 進入을 차단함으로써 保險會社의 亂立으로 인한 募集秩序의 혼란을 방지하고 保險契約者를 保護하는 公正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으며 특히 기존보험사 중심으로 안정적인 保險산업 發展을 이룩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동 제도는 自由로운 市場進入을 制限함으로써 市場원리에 입각한 公正한 競爭을 차단하여 서비스의 質이나 價格측면에서 다른 競爭市場과 비교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내년부터 保險社 設立基準 중 經濟的 需要審査條項이 廢止되고 투명하고 객관적인 기준이 도입됨에 따라 外國保險事業者의 國內進入이 용이해질 것이나 生命보험산업의 경우 1980년대 이후 27개의 新設사가 진출하여 있기 때문에 市場의 潛在需要에 비해 供給者가 過다한 상태이고 國內 生保산업의 獨특한 판매방식 등을 고려할 때 外國 生保社의 追加進入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현재 支店 및 事務所의 설치만이 허용되고 있는 손해보험의 경우 新規 合作社 또는 子會社 등의 형태로 해외보험사의 國內진출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공급자의 수적 증가에 따른 경쟁의 촉진으로 보험사들은 體質改善을 통하여 經營의 效率性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경주할 것이며 계약자 측면에서도 서비스의 質이 개선되고 保險료가 引下되는 등 公正적인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에 원보험사업자나 재보험사업자 모두 競爭深化로 收支가 惡化되어 궁극적으로 계약자에게 피해를 입힐 가능성도 증가할 것이다.

<表 8> 經濟的 需要審査 廢止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보 험 사	· 체질개선을 통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지 악화
계 약 자	· 공급자의 수적증가에 따른 경쟁환경 조성으로 보험료인하 및 대고객서비스 향상	· 보험사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수지 악화로 보험금지급불능 등의 피해 가능성 증대
모집조직	· 모집조직에 대한 수요 증가 및 모집조직의 효율성 증대	· 전문성이 결여된 영세 대리점의 경쟁력 약화

3. 國境間 去來의 追加許容

외국보험회사가 우리나라에 支店 또는 子會社 등의 營業據點을 설립하지 아니하고도 국내 보험가입자에게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國境間 去來(cross-border)가 1997년 1월부터 생명보험 전종목, 손해보험종목 중 장기상해보험, 해외여행보험, 선박보험에 대하여 추가로 허용되게 된다. 이러한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으로 내국보험사업자들은 不特定 多數의 外國保險會社들과 경쟁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經營의 效率性和 國際競爭力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個人保險의 경우 현재 보험계약이 募集人을 통한 거래방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국경간 거래로 인한 국내시장잠식은 단기적으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모집인을 통한 영업방식의 高費用化에 따라 향후 인터넷 등 情報通信媒體를 활용한 영업방식이 활성화될 경우 그 파급효과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生命保險 團體保險의 경우 현재 企業貸出과 연계되어 보험가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향후 기업들의 資本調達이 용이해질수록 外國保險會社와의 국경간 거래 발생가

능성은 커질 것이다.

企業性 損害保險의 경우 주요 대그룹에 속한 계열 손보사들은 기본적인 물건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나 손보사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대기업들의 고액물건 및 손해율이 낮은 우량물건 등은 국경간 거래의 추가허용에 따라 外國保險會社에 대한 직접부보 또는 해외에 캡티브(captive)사를 설립하여 부보하는 방식 등을 통하여 해외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계열사 소속이 아닌 손보사들이 기업성 보험부문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전망된다.

<表 9> 國境間 去來 追加許容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 경쟁에 대처하기 위한 경영의 효율성 및 국제경쟁력 제고	· 고액기업성물건 및 우량물건의 해외 유출 증가 · 생명보험 단체보험시장의 해외유출 가능성
재보험사	-	· 원보사의 해외재보험사와의 직접거래 또는 재보험중개인을 통한 거래 증가로 인한 수지악화
계약자	· 보험료인하 및 대고객서비스의 향상	· 불량 외국보험회사와의 거래로 인한 보험금지급불능사태 발생가능성 · 보험사기단으로부터의 피해 가능성
모집조직	· 인터넷(internet)활용 등 모집방식의 다양화	· 모집인의 고비용화로 인한 기존 방식 쇠퇴

4. 再保險自由化

1997년 4월부터 화재, 특종보험 등 전 종목에 대한 再保險去來가 완전자유화됨에 따라 料率求得協定 및 國內社優先出再制度가 완전 철폐되었다. 요율구득협정이 철폐됨에 따라 國內原受社間의 料率競爭이 심화될 것이다. 특히 보험중개인 제도의 도입으로 손해율이 낮은 高額企業性物件의 料率引下競爭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반

면에 불량물건의 경우 引受拒否 또는 料率引上으로 재보험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또한 國內社優先出再制度 폐지와 원수사들의 海外再保險 直去來 또는 再保險仲介人을 통한 海外再保險 去來의 증가로 국내원수사들의 再再保險料 수입이 감소되어 再再保險料 確保를 위한 국내사간의 相互再保險 및 外國社와의 交換再保險(Reciprocity) 거래가 성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재보험거래 자유화의 영향으로 海外 出·受再 去來의 수지역조현상이 심화될 것이며 海外不良再保險者와의 거래 증가로 인한 保險金 回收不能事態의 발생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한편 그동안 내국시장에서 獨占的 地位를 누려온 大韓再保(株)의 경우 재보험자유화에 따른 協商力 弱化和 大型 外國再保險社와의 競爭深化로 인한 심각한 經營惡化가 우려된다.

<表 10> 再保險自由化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원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율구득협정 폐지에 따른 국내사간 요율경쟁가속 · 국내사우선출재제도 폐지에 따른 재보험료 수입감소 · 재보험 출재채널의 다양화에 따른 협상력의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덤핑요율에 의한 불량 외국재보험사와의 거래가능성 증대 → 보험금 회수지연 또는 회수불능사태 발생가능성 증대
계약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료 인하 	-
재보험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경쟁력강화를 위한 경영의 효율성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상력 약화와 대형 외국재보험사와의 경쟁심화에 따른 수지역악화 · 해외 출·수재거래의 수지역조 심화

5.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 對外開放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은 WTO 협상때부터 계속 요구된 사항으로서 그동안 外國人投資制限業種으로 묶여 있었으나 OECD 가입협상을 계기로 1998년 4월부터 同 業種에 대한 외국인투자가 허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선진국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國內 損害査定 및 保險計理 부문에 外國의 先進保險技法이 도입됨으로써 同 産業이 活性化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대규모 資本 및 專門性を 보유한 外國사와 비교할 때 內國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의 경우 그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회사수도 미미하기 때문에 國內시장의 잠식이 우려된다.

向後 料率自由化가 지속적으로 추진되면 要素의 自體算出能力이 부족한 보험사의 경우에는 外부의 専門보험계리회사에 料率算出을 委託하여 부적정한 要素산출에 따른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됨으로써 經營수지가 개선되는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新危險率을 도입하는 상품을 개발하는 경우에도 國內 관련 통계 부족 등으로 자체적인 산출이 어렵기 때문에 契約者群別로 세분화된 언더라이팅이 보편화되어 있는 선진국 専門보험계리회사로부터 要素산출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도 있을 것이다. 한편 계약자의 입장에서보다 선진화된 양질의 손해사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外부보험계리회사가 객관적이고 독립된 위치에서 계약자의 危險度에 상응한 適正料率을 산출함으로써 덤핑요율로 인한 支給不能事態 등과 같은 피해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表 11> 損害査定業 및 保險計理業의 對外開放에 따른 豫想效果

구 분	긍정적 효과	부정적 효과
보 험 사	· 적정 要素산출을 통한 經營수지 개선 · 國內관련통계가 부족한 신위험율을 도입하는 신상품개발 용이	· 손해사정 및 要素산출업무의 대외종속
계 약 자	· 객관적이고 専門적인 손해사정 및 要素산출을 통한 소비자 권익증대	-
손해사정회사 및 보험계리회사	·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관련 선진보험 기법의 도입 · 內국보험시장에 대한 질적 통계자료 및 정보활용의 극대화를 통한 효율성 제고	· 자본과 専門성을 보유한 대규모 外國사의 진출로 인한 시장잠식 및 산업기반 위축